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3년 9월 18일

나. 제 안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3년 9월 19일

라. 상정일자 : 2003년 12월 23일

제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 9. 23)
상정, 질의, 토론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1. 03)
상정, 질의, 토론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선산출장소장 조 훈 영

나.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 구미원예수출공사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함.

다.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제1항 “추천 위원수” 일부 개정 및 제3항 “위원의 자격” 신설
 - 제4항 “시장은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 ...” 신설

- 위원의 결격사유(제5조)
 - 제3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신설
- 사장후보의 추천(제8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 추천
 - 사장후보의 모집,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 할수 있음

라.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정 석 광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미원예수출공사 사장후보추천 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 “회의”, 제8조 “사장후보의 추천” 등을 일부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